

2019년도 노동조건개선위원회 활동보고

위 원 : 놀부, 아몬드, 사탕, 해바라기 / 신&구 이사장, 재정이사, 방대표

※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교사회, 이사회, 총회 등의 동의에 관계없이 효력을 갖는다.

1. 경과보고

-2019년 1월 중 교사회와 노개위(놀부, 아몬드, 사탕) 구성과 협의 관련 논의

-2019. 1. 24 : 최저임금 인상 금액을 적용하여 교사회 측에 협의(안) 제출
기본금 인상 금액을 적용하여 정교사, 조리교사 임금 책정 요청.

▶ 정교사

1.기본금(7,530원 -> 8,350원 인상)

급여(월) **1,573,770** 원에서 **1,745,150** 원으로 **171,380**원 인상(휴게시간 포함)

구분	최저임금	근무시간(일)	근무시간(주)	주휴시간	한달근무시간	급여(월)
보육교사	8,350	9	40	8	209	1,745,150

2.대표교사 직책수당 인상

20만원 →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

3.시간외 수당

기준: 일일 보육시간 내 추가근무 시간에 대해서만 청구

변경: 기존 + 월 정기 교사회 긴 회의는 추가근무 2시간 인정

▶ 조리교사

1.기본금(7,530원 -> 8,350원 인상)

급여(월) **1,377,990** 원에서 **1,528,050** 원으로 **150,060**원 인상(휴게시간 포함)

구분	최저임금	근무시간(일)	근무시간(주)	주휴시간	한달근무시간	급여(월)
보육교사	8,350	8	35	7	183	1,528,050

2. 최종 협의안

▶정교사

구 분	2018년	2019년	비 고
기 본 금	1,573,770	1,745,150	휴게시간 포함
상 여 금	기본금에 포함	기본금에 포함	동일
방학 및 연가	교사대회 제외 년 10일	교사대회 제외 년 10일	동일
연차	기본 15일(2년마다 1일 추가)	기본 15일	동일
생휴 수당	급여로 지급	급여로 지급	동일
대표교사 수당	20만원	30만원	10만 인상
근속수당	1년이상 3만원	1년이상 3만원	동일
교사 간회의	5:00 퇴근	5:00 퇴근 (2시간 추가수당 지급)	수당 지급
교사회의비 (복지비)	15만원	15만원	동일
설,추석 명절	20만원	20만원	동일

2) 조리교사

구 분	2018년	2019년	비 고
기 본 금	1,377,990	1,528,050	휴게시간 포함
근속수당	1년이상 3만원	1년이상 3만원	동일
상여금	명절상여금 20만원	명절상여금 20만원	동일
연차	년 10일 (유급 5일 + 무급 5일)	년 10일 (유급 5일 + 무급 5일)	동일

3. 기타: 근로계약서 양식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으로 변경 / 별첨

근로계약서

수원공동육아협동조합 달팽이어린이집(이하 '갑'이라 함)과 근로자 강문정(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조(담당업무)

"을"의 담당 업무는 "조리업무"로 하되, 업무상 필요한 경우 갑은 을의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근로 장소)

"을"의 근로 장소는 수원공동육아협동조합 달팽이어린이집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한 경우 갑은 을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근로일 - 평일

나. 근로시간 - 1일 7시간, 주35시간(기준 08:30 ~ 16:30)

다. 휴게시간 - 14:00 ~ 15:00

② "갑"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을"에게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고 본 근로계약서의 체결로 "을"은 이에 동의한다.

제4조(임금)

① "을"의 임금은 월급여 총액은 (1,528,050)원으로 한다.

② 임금의 구성항목과 그 계산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구성항목	급여액	계산방법
기본급	1,528,050원	8,350원 × (183시간)
수당1 (법정수당 및 제수당)		※수원공동육아협동조합 급여규정에 근거하여 지급

③ 전항의 임금은 매월 일부터 일까지 기산하여 당월 일에 "을"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한다.

제5조(휴일)

① "을"의 유급휴일은 주휴일(매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로 한다.

② 그 밖의 유급휴일은 "갑"의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6조(휴가)

①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전년도 8월 이상 출근 시 연간 15일, 입사

첫해는 전월 개근 시 1일을 부여)를 부여하나 방학기간 10일 포함 한다.

② 연차유급휴가 외 5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나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은 하지 않는다.

③ 감염병으로 진단 받은 경우 치료기간까지 병가 또는 휴직 처리 한다.

단, 진단서 제출로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병가 또는 휴직(면직)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복무규정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2019년 3월 1일

갑(사용자)

사업장명 : 수원공동육아협동조합 달팽이어린이집

대표자 : 김 중 욱 (인)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45-11

을(근로자)

이 름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수원공동육아협동조합 달팽이어린이집

* 출처 : 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2017). 어린이집 문서 서식 양식.